

특집

대학의 개혁과 발전전략을 점검한다

전문대학원의 발전방향과 과제

임 천 순

세종대 교육학과 교수

1. 문제 제기

대학교육이 대중화 단계에 들어서면서 현장 중심의 실무와 이론을 고루 갖춘 보다 수준 높은 전문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대학원 교육체제에 대해서도 다양화에 대한 요구가 더욱 커지고 있다. 최근에 들어와 성인의 재교육 및 전문인력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힘입어 여성 및 고령 학생 등의 대학원 진학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전통적인 학문탐구 위주의 대학원 교육뿐만 아니라 다양한 목적을 지닌 전문대학원에 대한 교육 요구가 특히 증가되어 오고 있다. 그러나 전문대학원에 대한 사회 요구의 급격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전문대학원 제도는 그 실행에 있어 교육여건이나 내용측면에서 볼 때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우리나라 전문대학원 교육은 전문교육이 추구해야 할 질적인 수월성 면에서나 이를 뒷받침하는 제반 교육여건 면에서 매우 열악한 형편에 처해 있다. 특히 대부분의 ‘전문’ 대학원이 전담 교수 요원이나 시설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사회가 필요로 하는 다양하고 새로운 유형의 전문화된 프로그램을 제공해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전문대학원 교육의 내용이 부실하고 학생지도와 강의 그리고 연구활동 등이 모두 만족할 수준에 못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학사운영을 보면, 일반대학원이 모두 주간으로 설치되어 있는 데 비해, 전문대학원은 약간과정으로만 설치할 수 있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고, 수업시간의 제한 및 학생들의 학업과 직업의 이중부담으로 교육과정 운영의 내실화를 저해하고 있다. 그리고 학과 중심의 폐

쇄적 교육과정 운영으로 인해 교육자원의 비효율성·경직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즉, 사회적 시대적 변화에 대응하는 교육과정 구상 및 개발 노력이 부족하고, 지나친 학과중심 교육과정의 운영으로 제한된 교과목을 개설하고 있어서 전문인력 및 재교육을 위한 교육과정을 충실히 운영하기에 크게 미흡하다. 특히 대학원간의 협동체제는 거의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같은 학교 내에서도 일반대학원과 전문대학원 간의, 그리고 같은 대학원 학과간의 연계성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2. 최근의 정책 변화와 전문대학원의 발전방향과 과제

이 글에서는 최근의 대학원 관련 정책변화에 비추어, 특히 근래에 관심을 모으고 있는 '대학원 대학' 또는 '단설대학원' 등을 중심으로 앞으로 전문대학원의 발전방향과 과제를 논의해 보고자 한다.

1) 최근의 전문대학원 정책 변화

최근 교육부는 '대학원 교육제도 개선안'에 관한 발표('95. 8. 21)에서 대학원의 유형을 크게 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으로 구분하고 있다. 일반대학원은 학문 중심의 과정 운영을 통해 학자를 양성하고, 전문대학원은 특정직업과 연계된 분야의 과정운영을 통해 전문적 인력양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특수대학원은 직업인력 또는 일반성인의 재교육을 통해 계속교육 기능을 수행하는 역할을

한다. 아울러 현장 중심의 실무와 이론을 겸비한 '세계화·정보화 관련 전문요원을 양성'하기 위하여 학부가 없는 단설대학원 설치 및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을 학부과정 없는 대학원도 둘 수 있도록 교육법을 개정(1995. 12), 단설대학원 설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¹⁾ 여기에서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앞으로는 학부 없는 대학, 즉 '대학원 대학'(또는 단설대학원)의 설치가 가능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설치분야에서도 정보통신, 통상외교, 국제관계 및 산업디자인 분야 등을 사회적 요구에 따라 탄력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되, 필요에 따라서는 교육부장관이 설치분야를 사전 예고할 수 있도록 하고 소수의 대학원에 한해 설립을 허용한 후 그 운영실태와 성과를 평가하여 설치분야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2) 단설대학원 육성의 필요성

앞으로 고급 전문기술인력의 수요는 물론 날로 혁신되는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기 위하여 대학원 수준의 재교육 수요가 다양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바, 대학원 프로그램의 다양화 측면에서 단설대학원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은 매우 의미있는 정책의 변화라고 볼 수 있다.

대학원 대학은 학사학위과정이 없는 대학원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전문대학원의 경우, 전공별로 학사학위과정이 없는 대학원이 이미 몇 개 존재하고 있다. 예를 들면 서울대 행정대학원, 환경대학원, 보건대학원 그리고 경희대 평화복지대학원 등이다.

1) 단설대학원 설립기준(안)에 의하면, 설립권자는 학교법인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법에 의한 특수법인의 경우는 관계부처간의 합의에 따라 특별법을 개정하여 설립이 허용될 것으로 예상된다(예: 한국개발연구원법의 개정으로 국제관계대학원 설립). 한편, 교육부안에 의하면, 단설대학원의 최소 설립규모는 학생 총정원 200명으로 하고, 단설대학원의 최소 설립 요건과 기준으로, 우선 교지, 교사, 수익용 기본 재산은 대학 설립 최소기준과 동일하게 하고 교원은 대학의 계열별 교수 1인당 학생수 기준의 2배 확보(인문·사회 1:15, 자연과학 1:10, 공학 1:10, 예체능 1:10, 의학 1:5)를 요건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외에도 우리나라에 이미 설립·운영되고 있는 단설대학원으로서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의 부설 대학원을 들 수 있다. 외국의 경우, 기업이나 전문단체들뿐만 아니라 기업체나 연구소에서도 특수한 형태의 단설대학원이 운영되어 오고 있다. 일본의 경우, 학사학위과정이 없는 독립 전공 대학원이 오사카대학 대학원의 경제학 연구과, 공공 경제학 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관련 학사학위과정이 전혀 없이 독립 학파로 개설된 것으로는 동경공대 대학원의 종합 이공학 연구 과정을 비롯한 여러 개의 대학이 완전한 단설대학원의 형태로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앞으로 새롭게 출현·설립될 수 있는 대학원 대학과정으로 국책연구소(예컨대 설립 추진중인 KDI 부설 대학원), 산업체나 경제단체 부설 대학원 또는 종합병원 등의 특수 전문기관에서 부설하는 학위과정과 같은 극히 특수화된 전문대학원 프로그램의 개설을 예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유형의 학위과정은 고등교육의 범주를 대학 캠퍼스 밖으로 확장하는 의미에서 가히 획기적인 것이다.

3) 주간 전문대학원 설치의 필요성

대학원 대학에 대한 정책에서 교육과정을 엄격하게 운영하고 특수 전문직업 분야 전문가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주간과정의 전문대학원 설치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산업사회가 고도화되어 감에 따라 전문인재의 신규양성은 물론 현장 근무 인력에 대한 재교육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으므로 석사학위과정 전문대학원의 경우에도 그 운용을 야간에만 국한할 필요가 없다. 최근 들어 기업현장에도 유동시간 근무

제 도입 및 시간제 근로제와 같이 고용형태가 바뀌고 있으며, 근무 시간대도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일부 산업체에서는 질 높은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안식년제도까지 활용하면서 종업원들을 전일제 학생으로 주간 전문대학원에 보내고자 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주간 전문대학원의 설립·확대를 통해 현장 근무 인력 재교육의 교육 수요에 부응하는 한편, 유능한 인재를 양성한다는 점에서 교육의 수월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러한 형태의 전문대학원은 서구의 전문대학원(박사학위까지 가능)과 유사한 것으로 학문지향보다는 더욱 전문적인 직업지향적 교육 및 연구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모든 대학원이 질적 수월성을 확보·유지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이므로, 현실적으로는 대학원별, 특히 특수전문 분야에서 기능의 특성화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현행 전문대학원의 전임교원, 시설·설비 확보 등을 감안하여 학문적 수월성이 인정되는 분야나 특정학과를 토대로 하여 이를 전문대학원으로 확충·발전·육성하도록 하고, 이러한 대학원에 대해서는 엄격한 기준을 설정하여 박사학위과정의 설치를 인가할 필요도 있다.

4) 대학원 전임교수요원의 확보

현행 대학설치기준령에는 학사학위과정 학생 정원수에 따라 대학교원 확보기준을 정하고 전문대학원을 설치할 때는 교수를 추가로 확보하지 않아도 된다²⁾고 규정하였다. 일반대학원의 경우, 대학원 전임교수 확보에 관한 별도의 규

2) 대학원 규정에서는 대학원이 각 과정의 각 전공마다 3인 이상의 교원(조교는 제외한다)을 배치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대학원 규정 제7조에 명시된 그 기준이 너무 높아 원장 규정으로 해석되고 있는 반면 교육법시행령, 대학설치기준령 등 상위 법령에는 대학원 설치의 교수확보 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실제 대학원 설치에 따른 별도 교수 채용 부담이 전혀 없는 실정이다. 이는 대학원의 남

정이 없으며 대학원 전임교수를 확보하고 있는 학교도 거의 없다. 그렇다고 학사학위과정 소속교수가 대학원 교육을 담당할 만큼 확보되어 있는 것도 아니다. 특히 대부분의 전문대학원은 그 자체의 교수진을 확보하지 못하고 거의 외부강사에 의존하는 형편이어서 학생들이 제대로 지도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학과당 최소의 전임교수의 확보는 필수적이어야 한다. 제한된 재원을 갑자기 마련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할 때 일반대학원 및 학부 등과 연계성을 가진 과목으로 공동 임명제를 통하여 교수요원을 충족하는 것도 부분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 특히 앞으로 '대학원 대학'의 설립준칙이 마련되고 이에 따라 설치될 단설대학원이나 주간 중심 전문대학원의 박사학위과정 개설시에는 교수확보 기준이 엄격히 적용되어야 한다.

5) 대학원간의 연계체제 확보

전문교수요원의 확충과 함께, 특히 한정된 교육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학제적 연구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대학원의 여러 학과가 공동으로 협동과정 또는 광역과정을 편성·운영하는 것을 권장할 필요가 있다.³⁾

동일 대학원 내에서 두 가지 이상의 전공분야 또는 학과가 공동으로 협동과정을 편성·운영한다든가, 외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새로운 학위과정인 광역과정을 개발·운영함으로써 교육과정의 폐쇄성을 지양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협동과정이나 광역과정을 이수한 사실을 학위기에 명시하여 응분의 인정을 받도록 할 필요가 있다.

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전문대학원내 다른 학과와 동일 대학내 다른 대학원에서 수강하는 것을 권장함과 동시에 다른 대학의 전문대학원(외국 대학원도 포함) 또는 연구소에서 수업받는 것을 인정하는 제도를 운영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러한 제도의 도입은 대학원간 학문교류 및 정보교류를 가능하게 하고 등록한 대학원에 수강 희망과목의 교수가 없을 경우에도 수강을 가능하게 하며, 개설강좌수의 부족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본다.

6) 대학원 학제운영의 자율성과 책임성 제고

대학원 체제의 개방화 그리고 대학원 종류의 다양화는 바로 대학원 학제 운영의 탄력성에서 비롯된다. 미국은 물론 영국이나 일본의 경우는 국가가 대학원에 대해 지원하는 행·재정적 측면을 위주로 대학원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나머지 대학 자체의 관리 운영은 대학의 자율에 맡기고 있다. 이러한 자율성의 바탕 위에서 모든 대학이 교육 프로그램과 대학원 관리 운영에 독자성과 특수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대학원과 국가의 관계가 재정적인 지원 없이 종속적인 관계에 있어왔기 때문에 대학원 관리 운영 등에서 자율성과 탄력성이 배제되었다. 앞으로는 모든 대학원이 특수성과 독자성을 가질 수 있도록 그 관리 운영에 융통성과 자율성을 부여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단기적으로는 지금과 같이 대학원 학생 정원을 정부가 조정·관리하는 기

설과 대학원 질 저하의 가장 큰 원인이 되어 왔다.

3) 선진국 대학원 제도의 한 특징은 대학원간, 특히 전문대학원간의 협력체계가 널리 강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간 교수와 프로그램 및 시설의 협력, 교류체계가 널리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협력체계는 대학원간 프로그램의 중복을 피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고 학교별로 특성있는 프로그램을 개발·육성하는 효과가 있다. 또한 전문대학원의 경우, 시대적 사회적 요청에 부응하여 신생분야 등 아주 세분화된 학문영역까지 학위과정을 개설하고 있으며, 다학문적 접근방법에 기초한 실무위주의 대학원 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하고 있다.

간 동안 전문 직업분야의 정원은 대학원 교육에 대한 사회적 수요와 인력수급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처하는 정책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장기적으로는 전문인력의 수급 상황과 학생 수요 등을 감안하여 대학이 자율적으로 학생정원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대학원 평가인정제도의 정착과 연계시켜 단계적으로 이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학사학위과정 평가와는 별개로 전문대학원 자체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인정제도도 도입해야 한다. 그리고 평가인정제의 도입을 지원하기 위해 대학원의 설치기준을 정비해야 한다. 대학원의 설치기준 및 평가인정체제 그리고 대학원 내의 자체 평가위원회를 통하여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대학원 운영의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본다.

3. 맷음말

최근의 관계법 개정에 따른 단설대학원의 허용과 함께, 앞으로 실무형 전문직 인력의 양성 및 재교육 기능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특수분야 전문대학원 설립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신규 수요계층(외국인, 여성, 시간제 학생 등)의 수요 급증에 따른 대학원 교육 프로그램의 다양화를 위하여 새로운 유형의 전문

대학원이 설치·운영될 전망이다. 따라서 각 전문대학원은 혁신적인 교육방향의 모색을 통해 전문대학원의 시장 변화를 예측하고 변화에의 적응을 통해 명실상부한 교육·연구 전당으로서의 위상 정립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주요 전문대학원 교육의 학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개편해야 할 것이다. 우선 다양한 교육적 필요와 요구를 반영하기 위하여 전문대학원의 학위과정과 수업연한 등 학제의 운영이 보다 융통성 있게 개편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단설대학원 설립 허용에 따른 학제개편 방안 논의와 함께 의학 및 신학 전문대학원 제도의 도입 방안도 적극 논의되고 있다. 최근 논쟁이 되어온 법학 교육제도는 물론 의료, 신학계 그리고 교직의 전문화를 위한 전문대학원 프로그램의 다양화와 특성화에 대한 논의는 계속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

임천순/미국 하버드 대학에서 교육행정학 박사학위를 받은 후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부장과 국제협력실장을 역임하고, 현재 세종대 교육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며 교육개혁위원회 전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 『대학정원 자율화 방안 연구』, 『국비유학제도 개선 연구』, 『대학원제도 개선 및 법령정비에 관한 연구』 등이 있고, “교육산업의 개념과 구조”, “교육투자의 생산성과 경제효과 분석의 이론적 접근” 외 다수의 논문을 발표했다.